(정오표) 온실가스 명세서 검증 매뉴얼 및 세부검증 가이드라인

Date: 2022-01-17

<table>
<tr><th>분야</th><th>페이지</th><th>수정 전</th><th>수정 후</th><th>비고</th></tr>
<tr><td>폐기물</td><td>p. 516 ~519</td><td>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 세부분류는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table>
<tr><th>폐기물 성상</th><th>세분류</th><th>예시</th></tr>
<tr><td>음식물류 (음식, 음료 및 담배)</td><td>폐식용유, 동식물성잔재물, 왕겨 및 쌀겨, 음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폐사료</td><td>폐식용유/ 동물사체, 축산물가공잔재물, 수산물가공잔재물, 폐패각, 폐모피류, 피혁가공잔재물, 동물털, 동물성유지류, 그밖의 동물성잔재물, 주정박, 맥주박, 유박유잔재물, 초본류, 그밖의 식물성잔재물, 그밖의 동식물성 잔재물/
왕겨 및 쌀겨/
음식물류폐기물,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잔재물/
폐사료</td></tr>
<tr><td>폐섬유류</td><td>폐섬유류</td><td>폐천연섬유, 폐합성섬유, 폐의류, 그밖의 폐섬유</td></tr>
<tr><td>폐목재류</td><td>폐목재류</td><td>임목폐목재, 제재부산물, 목재가공공장 부산물, 폐가구류,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산업현장의 실</td></tr>
</table>
</td><td>- 삭제</td><td>인증지침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임에 따라 해당 문구 삭제 (한국환경공단 요청 사항).
추후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성상 분류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및 공표 예정.</td></tr>
</table>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td><td></td><td>외목재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폐목재, 폐선박 및 차량에서 나오는 목재, 건축물 화재현장에서 발생한 폐목재, 냉각탑, 산업용 바닥재 등에 사용된 폐목재, 건축현장 폐목재, 폐받침목, 그밖의 폐목재류</td></tr>
<tr><td>폐지류</td><td>폐지류</td><td>폐종이팩, 폐종이류, 폐벽지</td></tr>
<tr><td>석유제품, 용매, 플라스틱류</td><td>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전기전자제품류, 폐전주</td><td>폐합성수지류,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류, 폐폴리우레탄폼류, 양식용폐부자, 폐발포합성수지, 플라스틱폐포장재, 폐어망,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가정용폐전기전자제품, 산업용폐전기전자제품, 프린트토너 및 카트리지폐부속품, 그밖의 폐전기전자제품류/
폐전주/</td></tr>
<tr><td>폐합성고무</td><td>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타이어</td><td>폐합성고무류/
자동차 폐타이어, 그밖의 폐타이어</td></tr>
<tr><td>건설 및 파쇄 잔재물</td><td>폐토사류, 폐콘크리트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td><td>폐토사, 건설폐토석, 오염하천오염해양준설토/
폐콘크리트, 콘크리트폐받침목/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td></tr>
<tr><td>기타 사업장 폐기물</td><td>폐촉매, 폐흡착제 및</td><td>금속성폐촉매, 폐이온교환수지, 폐멤브레인수지, 그밖의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활성탄/</td></tr>
</table>
</td><td></td><td></td></tr>
</table>

	폐흡수제,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 폐가스포집물, 폐냉매물질, 폐흑연가루, 폐차발생폐기물	폐타일/ 폐보드류/ 폐판넬/ 이산화탄소스트림, 이산화탄소전환탄산화물/ 가전제품회수폐냉매물질, 자동차회수폐냉매물질, 공조기회수폐냉매물질, 그밖의 폐냉매물질/ 폐흑연가루/ 폐차파쇄잔재물, 폐차부품류, 그밖의 폐차발생폐기물/
하수슬러지(오니)	유기성오니류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분뇨처리오니, 가축분뇨처리오니, 펄프제지공정오니, 펄프제지폐수처리오니, 그밖의 폐수처리오니, 그밖의 유기성오니
폐수슬러지(오니)	무기성오니류	폐수처리오니, 정수처리오니, 하수처리오니, 하수준설토, 건설오니, 석재골재폐수처리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실리콘공정오니, 보크사이트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그밖의 무기성오니
의료폐기물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류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잔재물, 폐의약품류
배출량 산정 제외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생활폐기물

폐기물*	각, 소각재, 광재류, 분진류, 폐주물사 및 폐사, 안정화 또는 고형화 고화처리물, 폐석고 및 폐석회, 연소잔재물, 폐석재류, 폐금속류, 폐유리류, 폐소화기류, 폐전지류,	소각시설 바닥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고로슬래그, 제강슬래그, 비철금속제련공정광재, 선광공정광재, 그밖의 광재류/ 제철공정분진, 시멘트제조공정분지, 발전시설분진, 폐실리카 퓸, 그밖의 분진/ 점토점결폐주물사, 화학점결폐주물사, 샌드플라스트폐사, 폐여과사, 그밖의 폐사/ 안정화처리물, 시멘트고형화 처리물, 고화처리물, 킬레이트처리물, 그밖의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석고, 폐석회/ 연탄재, 액체연료연소재, 석탄재, 그밖의 연소잔재물/ 폐석분토사, 폐석재/ 고철, 비철금속, 폐금속캔류, 폐금속용기류, 그밖의 폐금속류/ 폐유리, 폐유리병류, 폐스마트유리, 폐유리섬유, 폐형광등파쇄잔재물, 그밖의 폐유리/ 폐분말소화기, 그밖의 폐소화기/ 1차폐전지, 2차폐전지, 2차폐축전지, 폐태양전지·전자기기페이스트
출처 : 폐기물관리법		

		* 배출량 산정 제외 폐기물 : 폐기물의 탄소 함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폐기물로서 불연분 폐기물로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한다. ■ 지정폐기물 **폐기물 성상** / **세분류** / **예시** **석유제품, 용매, 플라스틱류**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농약,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카, 폐광물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질 / 폐폴리에틸렌, 폐폴리프로필렌, 폐폴리염화비닐수지, 폐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폐페놀수지, 폐폴리우레탄, 폐합성고무, 폐폴리스티렌, 폐아크리로니트릴브타디엔스티렌(ABS수지), 그밖의 폐합성고분자화합물/ 유기인계폐농약, 유기염소계폐농약, 카바메이트계폐농약, 그밖의 폐농약/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그밖의 폐유기용제/ 폐유성페인트, 폐수성페인트, 폐락카/ 폐윤활유, 폐연마유・비수용성폐적삭유・폐열처리유, 폐기계유・폐작동유, 폐연료유, 폐오일필터, 기름함유 폐전선・폐케이블, 폐절연유, 그밖의 폐광물유, 폐동식물유, 그밖의 폐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유기용제, 그밖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의 것, 그밖의 폴리크		

			로리네이티드비페닐을 함유한 액상이 아닌 것/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금지물질, 연구・검사용 폐시약, 그밖의 폐유독물질/	
		건설 및 파쇄 잔재물 / 폐석면	제품・설비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되는 폐석면, 석면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집진필터 등	
		폐수 슬러지(오니) / 오니류	폐수처리오니, 유리식각공정오니, 제지공정오니, 실리콘제조공정오니, 보크사이트잔재물, 그밖의 공정오니	
		의료폐기물 /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격리의료폐기물/ 조직물류폐기물, 병리계폐기물, 손상성폐기물, 생물・화학폐기물, 혈액오염폐기물, 인체조직물 중 태반/ 일반의료폐기물	
		배출량 산정 제외 폐기물* / 폐산, 폐알칼리, 광재,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및 폐도자기조	폐염산, 폐황산, 폐질산, 폐불산, LCD・반도체공정의 폐산, 그밖의 폐산/ 폐가성소다수, 폐암모니아수, 폐수산화나트륨(고상), 폐수산화칼륨(고상), 그밖의 폐알칼리/ 알루미늄제조공정광재, 납 열처리・야금공정광재, 아연열처리공정광재, 철제조공정광재, 그밖의 광재/	

<table>
<tr><td></td><td></td><td>
<table>
<tr><td></td><td>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형광등 파쇄잔재물,</td><td>점토점결폐주물사, 화학점결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그밖의 폐주물사 및 폐사/
폐내화물, 폐도자기조각/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 소각재/
안정화처리물, 시멘트고형화처리물, 고화처리물, 킬레이트처리물, 폐석면 고형화처리물, 그밖의 고형화・고화처리물/
금속성폐촉매, 비금속성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형광등 파쇄잔재물</td></tr>
<tr><td colspan="3">출처 : 폐기물관리법
* 배출량 산정 제외 폐기물 : 폐기물의 탄소 함량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폐기물로서 불연분 폐기물로 적용하여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한다.</td></tr>
</table>
</td><td></td><td></td></tr>
<tr><td>폐기물</td><td>p. 519</td><td>위의 방법은 현재까지 진행된 폐기물부문 명세서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하여 해당 이슈에 대해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된 사례들이다. 이렇듯 물리적 조성에 대한 추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관</td><td>~~위의 방법은 현재까지 진행된 폐기물부문 명세서 보고 및 검증과 관련하여 해당 이슈에 대해 관장기관과 협의하여 진행된 사례들이다. 이렇듯~~</td><td>인증지침 및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임에 따라</td></tr>
</table>

<table>
<tr><td></td><td></td><td>장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배출량 산정계획 및 명세서의 기타참고사항에 명시하고 있는지 검증심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td><td>물리적 조성에 대한 추정방법을 적용할 경우 관장기관과 협의하고 해당 내용을 배출량 산정계획 및 명세서의 기타참고사항에 명시하고 있는지 검증심사원은 확인하여야 한다.</td><td>해당 문구 삭제 (한국환경공단 요청사항).
추후 한국환경공단에서 폐기물 성상 분류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및 공표 예정.</td></tr>
</table>